

##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의 성격과 방식에 관한 소고: 부왕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상래\*\*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Lim, Sang-Rae (201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Mode of the Spanish Rule in Colonial Americ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mode of Spanish domination in colonial America through the "Virreinato" or viceroyalty system. Virreinato was the most fundamental system of colonial rule, and it guaranteed the sovereignty and authority of the Spanish monarchy in colonial America. The virrey had almost absolute power in America. However, the Spanish king was able to control him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and process such as the Consejo de Indias and the Audiencia.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during the entire period of colonial rule, the Virreinato and Audiencia were closely connected under the colonial domination structure. Furthermore, thanks to the Virreinato, Spain could become a world empire that governed efficiently in territories far from the home capital. In this respect, the examination of the Virreinato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Spanish colonial rule itself.

**Key Words:** Nueva España, virreinato, virrey, colonial rule, Consejo de Indias, Audiencia, Spanish Empire

### 들어가는 말

라틴아메리카적 맥락에서 볼 때 식민사 연구의 중요성은 역사학적 의미보다 오히려 그것의 현재성 때문에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식민 유산이라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Sang-Rae Lim is professor of Department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srlim@bufs.ac.kr).

하는 당시의 구조와 내용들이 아직도 라틴아메리카 사회 곳곳에 남아있고 그것들의 다수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 발전, 민주화, 사회적 평등화 등의 가능성은 바로 식민지 유산의 경험 정도와 역비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00, 17-18). 그것의 인과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정지한 논증이 있어야겠지만 식민 시대의 유산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주는 조건중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라틴아메리카 연구에서 식민사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아메리카 지배 방식과 성격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 역사학적 중요성을 갖는다. 본국 스페인이 자신보다 수십 배나 넓은 아메리카 영토를 300년 동안이나 식민지로 통치·경영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본국의 왕명이 식민지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일이 걸렸던 당시의 교통과 통신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역사적으로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 대서양 너머 세상 저편의 광대한 지역을 수 백 년 동안 식민지로 통치할 수 있었던 ‘스페인의 비법’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 마술 같은 통치술에 대한 대답은 하나일 수 없으며 식민에서 독립까지의 긴 기간 동안 스페인과 아메리카 간의 다양한 관계와 권력 작용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식민통치에 대한 고찰은 스페인과 아메리카의 당대사에 대한 이해인 동시에 본국-식민지 관계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스페인의 아메리카에 대한 식민 지배의 양식과 성격은 매우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300년의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또 지역마다 직책이나 제도의 명칭도 서로 달랐고 도입이나 시행에 있어서도 시차가 있었다. 따라서 관련 연구들을 살펴봐도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통치의 성격을 명료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식민시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다루진 아니면 국가별로 다루진 고대문명에서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총사 또는 전(全)시대사의 한 부분으로 주로 다루었다. 또 그것도 주로 본국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의 맥락은 간과된 채 아메리카에서의 전개만으로 설명되어왔다. 따라서 최근 들어 아메리카 식민통치를 스페인적 맥락에서 설명한 역서들이 나온 점과 그간 거의 다루지 않았던 지방 차원의 식민통치를 연구한 논문들이 출판된 것은 이런 측면에서

기술할만하다.<sup>1</sup>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 국내외의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의 주요 성격을 부왕(副王, virrey)제도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기실 스페인의 아메리카 통치 제도와 구조를 일괄하여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메리카에 대한 통치 체제는 식민기간 동안 계속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영토와 식민 토지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관료 구조도 분화를 거듭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왕제는 거의 전 식민 기간 동안 아메리카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지배적인 통치기구로서 존속되었다. 즉, 부왕제는 식민지 지배 체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스페인 왕실의 식민지에 대한 통치와 권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부왕제에 대한 이해는 아메리카 식민통치 그 자체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부왕제의 성격을 본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인디아스위원회와 아우디엔시아(Audiencia) 등 식민체제에서 부왕제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이 스페인의 아메리카 통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민 통치에서 갖는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왕제가 식민 통치에서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 통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왕제의 기원과 성립

아메리카의 부왕제 역시 다른 식민 제도나 기구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 이식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원형은 스페인의 부왕제였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발렌시아, 마요르카, 세르데냐, 나폴리, 시실리아는 부왕이 대리 통치하였고, 아라곤과 카스티야의 경우 여행 등으로 왕이 부재중에 있을 때 부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티야의 이사벨 여왕이 연합하여 스페인이 성립된 이후에도 각 지역의 통치를 위해 부왕제가 필요했다.

특히 페르난도 국왕은 카스티야 문제에 더 치중했기 때문에 아라곤과 카탈루냐가 주축인 아라곤 연합 왕국의 국왕 부재는 만성적인 것이었다. 가톨릭 공동

1 김원중은 다수의 스페인사 역서들을 통해 스페인사에서 식민통치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김희순, 박수경, 김윤경의 연구는 각각 식민도시의 성립 과정, 아스텍 제도와와의 관계, 원주민 공동체의 형성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아메리카에서 지방 차원의 식민통치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왕에게 특히, 페르난도에게 여러 왕국들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사벨 여왕과 함께 이 중 가장 넓고 중요한 카스티야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37년 재위기간 동안 그가 카탈루냐에 있었던 것은 4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왕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중세 때 사용되었던 부왕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는 부왕에 의해 통치되었다. 스페인에서 부왕제가 없어진 것은 부르봉 왕가의 개혁 이후로 정치·군사적 권한을 가진 총사령관(*capitán general*)이 부왕을 대체하였다.

스페인의 제도는 대서양을 건너면서 그 성격이 변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에서 아우디엔시아는 사법적 기능 외에 정치·행정적 기능까지 겸했다는 점에서 스페인의 그것과 달랐다. 부왕제도 마찬가지였다.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New Spain*)와 페루 등 아메리카의 부왕은 왕의 대리자였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스페인의 부왕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같은 이유로 권한이 제한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아라곤 연합왕국의 부왕은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가진 왕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아메리카의 사법권은 기본적으로 아우디엔시아에 속했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부왕에게는 사법의 권한이 제한되었다. 이는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려는 국왕의 정책 때문이었다(Elliott 2000, 192). 반면,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아메리카의 부왕은 왕실과 사전 상의 없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권한을 갖기도 했는데, 이런 면에서는 아메리카의 부왕이 더 방대한 권력을 가지기도 했다(Buela 2007).

아메리카에서 부왕제는 콜럼버스와 왕실간의 협약에서 비롯되었다. 콜럼버스는 1492년 4월 17일 맺어진 산타페 협약(*Capitulación de Santa Fe*)에 따라 가톨릭 양왕으로부터 제독, 총독, 그리고 종신 부왕의 지위를 약속받았다. 실제로 아메리카 탐험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콜럼버스는 1493년 5월 28일 바르셀로나에서 왕명에 따라 발견된 지역의 부왕이자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최초의 부왕인 셈이었다. 그러나 당시 부왕직은 실질적인 권한이 크지 않은 명예직에 가까웠다. 더군다나 그는 아메리카에서 통치 수완을 보여주지 못해서 종신 부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99년 부왕직에서 해임되었다. 1509년 아들인 디에고 콜론이 부왕의 지위를 재인정 받았으나 자신의 아버지가 발견한 이스파니올라 섬(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관할권이 한정되었다(Buela 2007; Bustamante 1952, 241-242).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535년 카를로스

5세가 아메리카 식민 통치의 최상위 직책으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을 임명하는 것이 아메리카 부왕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해 카를로스 5세는 에르난 코르테스가 정복한 멕시코와 중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안토니오 데 멘도사를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 겸 아우디엔시아 의장으로 임명하였다. 멕시코 정복에 공을 세운 코르테스는 그 직을 종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이후 1542년 페루 부왕령, 1717년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 1776년 리오 델 라 플라타 부왕령이 세워졌다.

순차적으로 부왕령이 세워지면서 그 경계도 순서에 따라 확정되었다. 즉, 부왕령의 영역은 식민 통치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세워진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은 남쪽으로 중미 전역을 포함하였고 북쪽으로는 오늘날의 미국 남서부까지를 관할하였다. 그러나 파나마와 서인도제도도는 각각의 총독령으로 제외되었다. 서쪽으로는 1564년 필리핀을 정복하고 부왕령에 포함시켰다. 페루 부왕령은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브라질,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카리브 연안을 제외한 전 남미를 포함하였다. 파나마, 칠레, 리오 델 라 플라타는 아우디엔시아가 설치된 총사령부이자 총독령으로 총독이 통치하였다. 이들 지역은 부왕령 내에서 일종의 자치권을 가졌다. 페루 부왕령은 포토시를 중심으로 광업 생산이 증가하여 1500년대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다. 그러나 1600년대 들어 광업 수입이 감소하였고, 18세기 누에바 그라나다와 리오 델 라 플라타가 각각 부왕령으로 분리되어 그 위세가 크게 감축되었다(Rosati). 페루 부왕령이 설립되고 거기서 분리·확장되어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과 리오 델 라 플라타 부왕령이 설립되는 일련의 과정은 스페인 식민지배의 공간적 확산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왕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은 1717년 설립되었다가 1723년 폐지되었으나 1739년 재설립되었다. 보고타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를 포함하는 이 지역은 중요한 금 생산지였고 지정학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였다. 또한 대서양과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관문과 같은 지역으로 밀무역을 감시하고 해적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이후 스페인 왕실은 1776년 리오 델 라 플라타, 투쿠만, 파라과이, 알토페루(지금의 볼리비아)를 관할하는 리오 델 라 플라타 부왕령을 설립했다. 리오 델 라 플라타 부왕청은 남아메리카에서 리마와 부에노스아이레스간의 경쟁이 왕국 전체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포르투갈령 식민지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졌다. 더불어 파타고니아와 말비나스(포클랜드)에 프랑스와 영국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비하려는 것도 부왕령 설립의 이유였다(Rosati).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메리카의 부왕은 왕을 대신하여 아메리카의 통치를 담당하는 식민지 최상위 직책이었다. 정복과 식민이 가장 먼저 시작된 누에바 에스파냐에 처음 부왕이 임명되었고 이후 영토가 확장되고 식민이 확대됨에 따라 아메리카 전역으로 부왕제가 공고화되었다. 이로서 부왕제는 식민시대 전 기간 동안 아메리카 지배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부왕의 권한과 인디아스위원회

왕을 대신하는 권한의 인정은 왕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아메리카 부왕의 권한은 카를로스 5세가 1542년에 제정한 왕령<sup>2</sup>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부왕은 식민지에서 거의 전권을 가졌다. 다만 왕의 고유한 권한, 즉 새로운 탐험이나 정복사업을 개시하는 결정과 같은 권한은 제외되었다. 부왕은 영토 방어, 원주민의 개종, 교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졌고, 성직자 임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징세와 왕실의 이권을 보호하는 권리를 가졌다. 부왕이 실행하고 명령하는 모든 것은 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었다. 총사령관을 겸임하여 군권도 행사하였는데, 해상과 육상의 군 통수권 뿐 아니라 본국에서 온 함대의 지휘권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는 없었고 대개 전투를 지휘할 군인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입법의 권한도 있었다. 부왕은 본국이나 인디아스위원회가 제정한 명령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었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아우디엔시아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따라서 부왕은 인디아스위원회로부터 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부왕령내에서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Rosati). 부왕은 지방에 대한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고, 지방 관리들은 부왕에게 복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르봉 왕가의 행정 개혁으로 지방 행정의 권한이

2 아메리카에 대한 법과 규정은 다루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real provision*, *real carta*, *real ordenanza*, *real decreto* 등 여러 형태로 발표되었다. 이 중 *real cédula*(왕실 칙령)가 절차나 형식이 신속하고 다루는 내용도 가장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용되었다(Soberanes 1992, 64).

인텐덴테(intendentes)에게 이관되면서 식민말기 부왕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식민지에서는 최고 지도자였고, 부왕제는 식민기간동안 존속되었다.

부왕직은 전적으로 왕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기에 부왕의 임기도 변동이 많았다. 초기 부왕의 임기는 종신이었으나 이후 3년 임기제가 원칙이 되었으며, 부왕직을 잘 수행한 경우 3년을 더 연임하기도 했다. 식민말기에는 부왕의 임기는 5년이 되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1620-1660년 스페인은 포르투갈, 카탈루냐, 나폴리의 독립 요구와 전비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심해지자 아메리카에서 세금을 인상하였다. 이에 반대하여 누에바 에스파냐 전역에서 스페인인들의 저항이 일어났고, 일부 식민지 관리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처럼 부왕은 아메리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동시에 식민지에서 봉기나 소요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책임을 져야했다. 누에바 에스파냐의 경우, 1535-1821년 동안 총 63명의 부왕이 부임하였고, 평균 재임 기간은 약 4.5년 정도였다(Molina 2013, 157; Hernández 2002, 108).

한편, 부왕은 권위를 유지하고 식민행정에 전념하도록 항상 최고의 대우와 보상을 받았다(Hampe 1988, 68). 부왕은 왕의 대리로서 각종 행사에서 왕에 준하는 대우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신임 부왕의 취임식은 대규모의 수행원과 함께 화려한 환영 예식으로 치러져 왕의 즉위식을 방불케 했다. 이처럼 부왕은 아메리카 통치에서 거의 전권을 가진 왕의 대리자이자 왕권의 수탁자였고, 왕실은 전적으로 부왕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즉, 부왕은 아메리카에서 왕의 ‘또 다른 나’(el otro yo)였다.

부왕의 권한과 가장 밀접한 기구는 인디아스 왕실 최고위원회(El Real y Supremo Consejo de Indias, 이하 인디아스위원회)였다. 인디아스위원회는 부왕의 임명, 감사, 면직의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왕이 갖는 중요성, 특히 아메리카 통치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부왕의 임명은 왕과 본국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식민지 통치의 최고 심의기관인 인디아스위원회에서 중대하게 다루어졌다. 임명뿐만 아니라 부왕이 아메리카에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도 인디아스위원회의 몫이었다.

본국에서 인디아스위원회는 식민행정의 최상급 기관이었다. 인디아스위원회는 행정, 세무, 종교 등 인디아스, 즉 아메리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입법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인디아스위원회는 1519년 설립되었는데, 당시에는 카스티야위원회의 분과로 만들어져 아메리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이후 1524년에 아메리카 관련 업무를 전담할 독립 기구로 재정비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의장과 5-8명의 위원 그리고 한 명의 회계로 구성되었고 서기를 두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왕이 직접 임명하였다. 이는 인디아스위원회의 모든 결정, 선고, 법률, 협정은 왕실의 의지를 직접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의원들은 부왕을 지냈거나 아메리카 체류 경험이 있는 고위 성직자 또는 아우디엔시아 위원 등 식민지 실정을 잘 아는 인사들로 이루어져 식민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에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형식은 자문기구였지만 실제로는 식민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군사적으로도 아메리카의 정복 및 방어와 관련된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557년까지 위원회는 아메리카에서의 국고 수입을 관리하는 재정적 권한도 가졌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였다. 위원회는 부왕과 총독 그리고 오이도르(oidor, 재판관)와 같은 아우디엔시아의 구성원 및 중요 공직자를 추천 또는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이중 부왕의 임명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왕은 부왕을 임명했는데, 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카스티야 왕실의 귀족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18세기부터는 귀족이 아닌 관료들도 부왕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경우 왕은 이들에게 먼저 공작이나 후작의 작위를 수여한 뒤 부왕으로 파견하였다. 아메리카에서의 식민 행정 경험을 인정받아 부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안토니오 만소 데 벨라스코(Antonio Manso de Velasco)나 안토니오 데 길(Antonio de Guill)은 칠레 총독으로 임기를 마치고난 후 다시 페루의 부왕으로 임명된 경우였다(Hernández 2002, 76; Kang 2003, 75-76). 이는 일종의 승진으로, 부왕제 운영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입법기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아메리카와 관련된 법의 제정은 스페인이건 아메리카건 식민지와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초안을 작성하여 인디아스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제출된 초안은 위원회에서 논의 되고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왕에게 콘솔타(consulta)라는 형식의 보고서가 올려졌다. 왕이 콘솔타를 검토하고 승인을 하면 위원회에 다시 보내졌고, 위원회가 보고서 내용을 문서화하면 왕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고 이를 공포하였다.

이후 문서는 왕실의 칙허문서록(cedularios)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마드리드에서의 절차는 완료되고 법안은 아메리카로 이송되었다(Soberanes 1992, 64). 이외에 인디아스위원회는 식민통치와 관련된 법의 연기나 폐기도 왕에게 건의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또한 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위원회는 아우디엔시아, 통상원, 콘솔라도<sup>3</sup>의 최종심이었다. 또 아우디엔시아와 통상원 등 기구 간 이해 충돌도 중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분쟁 중 금화 6천 페소 이상의 송사의 최종심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부왕을 임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도 가졌다. 부왕을 포함하여 식민 행정의 책임자들은 관련 법령들을 적용할 때 폭넓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의 남용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수단과 제도가 필요했다. 이중 임지(任地)감사(Juicio de residencia)는 임기를 마친 공직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제도였다. 재무적인 감사가 주를 이루었고 모든 관리가 감사 대상이었으나 부왕 등 고위직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특별감사관이 파견되기도 했다. 이때 파견할 감사관을 정하는 것은 인디아스위원회였다. 이 제도는 해당 공직자가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지, 즉 임지(residencia)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따라서 피감사자는 대리인을 내세울 수 없고 본인이 꼭 감사에 응해야 했다. 또 다른 감사 방법은 방문(visita) 또는 방문관(visitador, 시찰관으로도 옮기기도 한다) 제도였다. 본국은 방문관을 파견하여 식민지 행정을 감독할 수 있었으며, 인디아스위원회는 왕에게 방문관의 파견을 건의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식민지의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Konetzke 1987, 141-142; Colegio de Mexico 2011, 110). 부왕에 대한 임지감사에서 부정이나 잘못이 적발되면 그에 대한 시정이 강제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부왕은 인디아스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었다. 인디아스위원회는 감사관의 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승진이나 정직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위원회는 부왕의 임명과 감독을 통해 부왕제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왕은 부왕을 임명하고 인디아스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부왕을 감독함으로써 아메리카의 대리 통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3 콘솔라도(Consulado)는 일종의 상사법원이었다. 13세기 아라곤에서 유래된 콘솔라도는 1494년 상인 길드와 상사 법정의 기능을 가진 기구였고, 아메리카에서 콘솔라도는 주로 상업에 관련된 송사를 맡았으며, 재판관들은 그 지역의 상인들에 의해 임명되었다. 이외 특별 재판소로는 광산 재판소와 종교 재판소가 있었다.

## 부왕제와 아우디엔시아

부왕제의 성립은 부왕제에 앞서 시행된 아우디엔시아와 인과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아메리카 통치에서 부왕과 아우디엔시아는 따로 얘기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민 초기 아메리카 통치의 책임자는 정복자들이었다. 이들은 왕실과 ‘카피톨라시옹’(capitulación: 협정, 협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을 맺고 아메리카에서 부왕, 총독 또는 총사령관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카피톨라시옹을 통해 부왕의 직위를 받은 것은 콜럼버스에게만 해당하였고 대부분은 총독으로 식민 행정의 권한을 받았으나, 그마저도 사법적 권한은 왕실이 행사함으로써 사법권을 통해 정복자들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했다. 또 아메리카에서 행정과 사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식민 초기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본국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심지어 본국까지 가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메리카에 아우디엔시아가 설립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아우디엔시아의 설립은 정치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아우디엔시아는 기본적으로 사법기구였지만 스페인 왕실은 아우디엔시아에 정치·행정적인 권한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정복과 식민 초기 총독의 직책으로 누에바 에스파냐를 통치하였으나 아우디엔시아가 설치된 후 총사령관의 직책만을 맡았다. 그에게는 군사적인 권한만 주어졌고 대신 부왕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아우디엔시아가 누에바 에스파냐 통치의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Rosati).

왕실은 정복자들을 대신하여 아우디엔시아라는 제도를 통해 식민지를 다스리려 했다. 그러나 왕실의 계산은 빗나갔다. 아직 아우디엔시아는 여러모로 불완전했다. 특히 오이도르(oidor)들이 사익을 위해 이권에 개입하여 전횡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정복자들과 결탁하여 원주민들을 착취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실은 식민지에 상주하며 왕의 직접적인 대리인으로서 식민 행정을 총괄할 인물을 통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을 구하게 되었고, 부왕제도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답이었다. 아우디엔시아에게 주어졌던 식민 통치 권한은 부왕에게 넘겨졌고 부왕은 아우디엔시아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로서 아우디엔시아는 기본적으로 부왕을 자문하는 역할만을 맡게 되었다(Molina 2013, 113; Hampe 1988, 69).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우디엔시아는 부왕제의

성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부왕과 아우디엔시아는 아메리카 식민 통치 체제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었다. 특히 부왕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디엔시아는 부왕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었고 때로는 부왕을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러한 부왕과 아우디엔시아간의 관계는 부왕제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식민통치 방식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우디엔시아는 주로 민사와 형사 소송을 다루었지만 십일조나 교회 재산에 관련된 종교심과 민사에 해당하는 성직자 범죄도 심리하였다. 아우디엔시아가 성직자에 대한 재판 권한을 가진 것은 왕실 후원제도<sup>4</sup> 때문이었다. 왕실과 공무원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송사도 담당하였다. 다만 부왕이 공석이거나 유고시에는 아우디엔시아가 다음 부왕이 올 때까지 식민행정을 대리하는 권한을 행사했다(Hampe 1988, 69). 이처럼 아우디엔시아는 사법기관으로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 부왕이 아우디엔시아의 의장을 맡긴 했지만 아우디엔시아는 식민지의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상급기관은 인디아스위원회뿐이었다. 따라서 아우디엔시아는 제도상 부왕에 종속되지 않았다.

아우디엔시아의 주요 구성원은 오이도르(oidor)였다. 오이도르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oir)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었다. 왕은 법률가를 오이도르로 임명했는데 초기에는 대부분이 페닌슐라레스(peninsulares: 스페인 태생 백인)였다. 따라서 오이도르로 구성된 아우디엔시아는 제도적으로 부왕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

오이도르에게 원주민 권리의 보호는 중요한 임무였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들은 원주민간 또는 원주민과 스페인사람간의 송사에 전념하였다. 원주민에게 소송비용은 면제되었고 지정변호인이 배정되는 등 공식적으로 원주민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그러나 판결은 스페인 식민자들에게 유리하게 내려지기 십상이었다. 오이도르는 식민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번제로 지방을 순회하였고, 문제가 있다거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부왕에게 자문을 하였다. 때때로 강력한 조언과 자문은 부왕의 식민 통치에 대한 감독이기도

4 왕실 후원제라고 할 수 있는 파트로나토 레알(patronato real)을 통해 로마 교황은 카스티야 왕에게 아메리카에서의 교구 설정, 십일조 관리 등 교회와 관련된 일련의 권한들을 위임했고 국왕은 성직자의 유지, 선교와 교회 건설 등의 의무를 맡았다.

했다(Buela 2007; Keen 2014, 261).

아우디엔시아는 중요한 식민 거점에 설치되었다. 최초의 아우디엔시아는 1511년 산토 도밍고에 세워졌고 이후 부왕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1527년 누에바 에스파냐의 멕시코시에 설립되었고 1538년 파나마에, 1543년 리마에 각각 아우디엔시아가 만들어졌다. 이후 식민통치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보고타(1548년), 키토(1563년), 칠레(1606년), 부에노스아이레스(1782년)에 아우디엔시아가 설립되었다(Bethell 1984, 11).

아메리카의 아우디엔시아는 부왕이 주재하는 부왕 아우디엔시아(Audiencia Virreinal), 총독이 주재하는 총독 아우디엔시아(Audiencia Pretorial), 부왕의 감독을 받는 하급 아우디엔시아(Audiencia Subordinada)로 크게 삼분할 수 있다. 아우디엔시아는 모두 인디아스위원회에 직속되어 있었으나 각 아우디엔시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규모는 차이가 있었다. 부왕 아우디엔시아는 부왕령의 수도와 중요도시에 세워졌는데, 산토도밍고, 멕시코시, 리마, 보고타, 차르카스(지금의 볼리비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에 해당된다. 총독 아우디엔시아도 부왕에 비교적 독립적이었고 왕이나 인디아스위원회와 직접 연락하였으며, 산토도밍고, 멕시코시, 파나마, 과테말라, 마닐라, 칠레, 부에노스아이레스, 보고타, 카라카스에 설립되었다. 하급 아우디엔시아는 과달라하라, 차르카스, 키토, 콘셉시온, 파나마, 쿠스코에 있었다(Hampe 1988, 79; Kang 1996, 50). 누에바 에스파냐에는 멕시코시와 과달라하라 두 곳에 아우디엔시아가 있었는데, 과달라하라 아우디엔시아(Nueva Galicia 또는 Jalisco 아우디엔시아라고도 함)는 실질적으로 멕시코 아우디엔시아의 하부 아우디엔시아였다.

아우디엔시아의 등급 구분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산토도밍고나 멕시코시의 경우처럼 전략적 가치나 경제적 중요성에 따라 등급이 변하기도 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아우디엔시아처럼 총독 아우디엔시아에서 부왕 아우디엔시아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우디엔시아의 구성도 그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최소 4명의 오이도르로 구성된 아우디엔시아도 있었지만 멕시코시 아우디엔시아의 경우 오이도르가 12명이 된 적도 있었다. 아우디엔시아 간에 오이도르의 이동도 가능했다. 낮은 급의 아우디엔시아에서 중요한 지역의 아우디엔시아로 승진하기도 했고, 결혼 등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아우디엔시아로 진출하기도 했다.

아우디엔시아가 사법기구로서 부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부왕과 아우디엔시아간의 관계에서 부왕이 아우디엔시아를 주재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부왕(또는 총독)은 의장으로서 아우디엔시아를 관할하고, 재판 을 주재하며, 형사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가졌으나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부왕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오이도르에게 재판을 배당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졌을 뿐이다(Hampe 1988, 68). 판결은 오이도르의 몫이었다. 이로서 부왕과 아우디엔시아는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아우디엔시아는 사법 기관이었기에 청렴성과 투명성이 특히 중요했다. 따라서 왕실은 오이도르에게 급료와 주택을 제공하고 대신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였다. 오이도르가 부정이나 전횡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 관할 지역에서 오이도르는 토지와 집을 소유할 수 없었다. 또 오이도르는 아메리카 출신 여성과 결혼할 수 없었는데, 이는 현지의 이권에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결혼이 가능했으나 이 경우 다른 지역의 아우디엔시아로 전출되었다. 공무 중에는 예복을 입어야 했고, 지인의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으며 금전거래도 금지되었다(Konetzke 1987, 139). 오이도르는 초기에는 페닌술라레스가 다수였으나 점차 크리오요(criollos: 식민지 태생 백인) 오이도르가 늘어났다. 이로서 크리오요는 식민 행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식민말기가 되면 지역에 따라 크리오요가 다수인 아우디엔시아도 생겨났다. 예를 들어, 1778년 리마 아우디엔시아의 오이도르 9명 중 본국 출신은 1명이었고 8명이 아메리카출신이었다. 이중 5명이 리마출신이었다(Lee 2003, 179; Konetzke 1987, 143). 크리오요 출신 오이도르가 늘어난 것은 전비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에서 관직 매매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또한 식민지에 파견할 엘리트가 한정되어 있어서 크리오요 외에 이를 담당할 자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우디엔시아는 최고재판소로서 사법을 담당한 식민통치의 중요한 축이었다. 동시에 아우디엔시아는 식민 초기에는 정복자와 총독을 견제하고 나중에는 부왕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권력에 대한 왕권의 우월을 보장하는 제도이자 기구였다. 따라서 아우디엔시아는 부왕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아메리카 통치 구조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부왕제와 스페인의 제국 체제

전술한 바와 같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본국의 통치 체제를 일괄하여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본국의 아메리카에 대한 통치는 매우 다양한 기구와 제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 그것들의 실행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식민통치 시스템의 최정점에 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카스티야는 여러 왕국(Reino)이 합쳐진 연합왕국(Corona)이었다.<sup>5</sup> 따라서 아메리카는 스페인 왕, 더 엄밀히 말해 카스티야 왕이 새롭게 획득한 또 다른 왕국이었다. 즉, 아메리카의 통치자는 스페인 왕이었고 왕은 식민지 통치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 당연히 아메리카에서 창출된 모든 부의 일정 비율은 왕실에 귀속되었다. 또 국왕은 교황으로부터 파트로나토 레알을 통해 식민지에서 가톨릭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에 대한 전권을 인정받았다. 아메리카 정복 당시 유럽은 절대왕정시대였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형식상 교황이 왕에게 왕관을 수여했으나 실제로는 왕이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넘겨받아 스스로 왕이 되는 형국이었다(Rosati). 따라서 왕의 권한은 거의 무한대였고 그의 명령과 의지는 곧 최고법에 해당했다.

그러나 왕은 스페인에 있었다. 너무 먼 거리였고 식민지와 소통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현지에서 식민지를 다스릴 권력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 식민 초기 아메리카의 통치는 정복자와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에 맡겨졌다. 그러나 식민통치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아메리카의 통치와 행정은 정복자에게서 오이도르나 부왕과 같은 본국에서 온 관료들에게 넘겨졌다. 왕실은 본국의 관리를 파견하고 아우디엔시아를 시행하여 식민지 행정을 담당케 하였고 이어서 부왕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정복자와 그 후손인 크리오요가 토착 세력으로 식민 통치에 참여하여 세력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은 식민지에서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본국에서 아메리카를 통치하였다. 식민기간동안 스페인의 어떤 왕도 아메리카를 방문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식민지 행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심을 갖는 경우는 많지

5 레이노(Reino)와 코로나(Corona) 모두 스페인어로 ‘왕국’을 의미한다. 레이노를 소왕국이라고 한다면 코로나는 왕국이 되며, 레이노를 왕국이라고 본다면 코로나는 연합왕국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왕국’과 ‘연합왕국’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않았고 대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관리가 식민지 통치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왕은 식민 통치에 참여하는 세력간의 상호 균형과 견제에 기초한 일종의 원격 통치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Mazín 2007, 65). 즉, 왕은 마드리드에 있으면서 식민지를 마치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통제하고 식민지에서 자신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지배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부왕제는 바로 이런 왕실의 의도와 정책이 잘 실현된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의 왕은 아메리카의 부왕에게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아메리카 통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실행되었지만 스페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왕을 조정하고 통제하였다. 스페인은 본국과 긴밀하게 연계된 부왕에게 아메리카의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스페인식 중앙집권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많은 권한이 부왕에게 넘겨진 것은 분권(分權)이 아니라 오히려 왕권의 강화를 위한 집권(集權)이었다. 부왕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졌지만 왕의 권한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스페인은 이를 통해 본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솜씨를 발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왕제는 스페인 제국의 중앙집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누에바 에스파냐와 페루에 부왕이 임명되면서 스페인 제국의 부왕은 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 나바라, 사르데냐, 시칠리아, 나폴리 등 일곱에서 아홉으로 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의 행정체계는 이후 2세기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처럼 스페인의 통치체계는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유럽과 아메리카로까지 세계제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확대 발전되었다(Elliott 2000, 192). 다시 말해 스페인은 부왕제를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걸쳐 있는 제국 체제를 유지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런 면에서 아메리카의 부왕제는 스페인의 세계 제국 통치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맺는말

스페인의 아메리카 통치 제도와 구조를 일괄하여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왕제는 식민지 지배 체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스페인 왕실의 식민지에 대한 통치와 권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복과 식민의 순서에 따라 누에바 에스파냐, 페루, 누에바 그라나다, 리오 델 라 플라타에 부왕령 체제가 성립되었고, 이로써 부왕제는 아메리카 전역에 공고화되어 식민시대 전 기간 동안 아메리카 지배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부왕제에 대한 고찰은 아메리카 식민통치 그 자체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메리카의 부왕제도 다른 식민 제도나 기구와 마찬가지로 그 원형은 스페인의 부왕제였다. 하지만 그 성격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부왕은 국왕 부재 시 행정과 사법을 대리하였지만, 아메리카의 사법권은 기본적으로 아우디엔시아에 속했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부왕에게는 사법권의 행사는 제한되었다. 하지만 아메리카의 부왕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스페인의 부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에서 부왕은 식민 통치와 관련된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부왕은 아메리카 통치에서 왕의 고유한 권한을 제외한, 거의 전권에 가까운 권력을 가졌으나, 왕은 여러 제도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왕을 통제할 수 있었다. 특히 왕실의 자문 기관인 인디아스위원회는 부왕의 임명, 면직, 감독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왕은 위원회를 통해 부왕을 임명하고 감독하며 아메리카의 대리 통치를 공고화할 수 있었다.

아우디엔시아는 식민지 최고 재판소로서 사법을 담당한 식민통치의 중요한 축이었다. 아우디엔시아는 식민지의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상급기관은 인디아스위원회뿐이었다. 따라서 아우디엔시아는 제도상 부왕에 종속되지 않았다. 부왕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우디엔시아는 부왕으로부터 독립적이었고 때로는 부왕을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동시에 아우디엔시아는 식민 초기에는 정복자와 충돌을 견제하고 나중에는 부왕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권력에 대한 왕권의 우월을 보장하는 기구로 작동했다. 이처럼 아우디엔시아와 부왕-아우디엔시아 관계는 부왕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아메리카 통치 방식을 파악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은 부왕제를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에 걸쳐 형성된 제국 체제를 유지하는 탁월한 통치술을 보여주었다. 스페인의 왕은 아메리카의 부왕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왕을 조정할 수 있었다. 즉, 스페인은 본국에 연계된 부왕에게 아메리카의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스페인식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페인은 본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세계 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으며, 이런 면에서 부왕제는 스페인의 세계 제국 체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Bethell, Leslie(ed.)(1984), *Historia de América Latina 2. América Latina Coloni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ela, Alberto(2007), “Las Indias no fueron colonias Así se gobernaba la América española,” *El Manifiesto*, [2007.09.10.], <http://www.elmanifiesto.com/articulos.asp?idarticulo=761>
- Bustamante, Pérez(1952), “Sobre los precedentes del Virreinato Colombino,” *Revistas de Indias*, Vol. 12, pp. 241-248.
- Colegio de Mexico(2011), *Nueva Historia Mínima de México*, Changmin Kim(trans.), Seoul: Greenbee.
- Elliott, John(2000), *Imperial Spain 1469-1716*, Wonjoong Kim(trans.), Seoul: Kachi.
- Hampe Martínez, Teodoro(1988), “La division gubernativa, hacendística y judicial en el virreinato del Peru,” *Revista de Indias*, Vol. 48, pp. 59-85.
- Hernández, Alicia(2002), *México una breve historia del mundo indígena al siglo XX*,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Kang, Sukyoung(1996), *Latinamerikasa*(History of Latin America), Seoul: Daehan Textbook.
- \_\_\_\_\_(2003), *Chilesa*(History of Chile), Seoul: HUFSS Press.
- Keen, Benjamin and Keith Haynes(2014), *A History of Latin America 1*, Wonjoong Kim and Sunghoon Lee(trans.), Seoul: Greenbee.
- Kim, Heesoon(2014), “The Role of Cities during the Period of Spain’s Colonial Empire 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Vol. 17, No. 1, pp. 139-156.
- Kim, Kihyun(2008), “Sikminji Sidae Yeongui Jungyoseonggwa Sikminji Yusan(The Importance of Colonial History Studies and Colonial Heritage),” *Jungnammyeongu*(Journal of Latinamerican Studies), Vol. 19, No. 1, pp. 17-32.
- Kim, Yoonkyung(2013), “The Political Colonization of Aztec Empire during the 16th Century: Change or Continuity?,” *Revista Iberoamericana*, Vol. 24, No. 3, pp. 1-33.
- Konetzke, Ricardo(1987), *América Latina II La época colonial*, Siglo XXI.
- Lee, Sunghyung(2003), “Jeongbokui Sahoesa(Social History of Conquest),” in Wootae Kim, *History and Culture of Latin America*, Seoul: Sowha.
- Mazín, Oscar(2007), *Iberoamérica del descubrimiento a la independencia*, El Colegio de México.
- Molina, Sandra and Alejandro Rosas(2013), *Erase una vez México 1*, Editorial Planeta Mexicana.
- Park, Soo-Kyoung(2014), “The Republic of Indians as Unit Socio-Politic in the New Spain,”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7, No. 4, pp. 209-235.
- Rosati, Hugo(?), *La América española colonial siglos XVI-XVII y XVIII*,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http://www7.uc.cl/sw\\_educ/historia/america/index.html](http://www7.uc.cl/sw_educ/historia/america/index.html)

Soberanes, José Luis(1992), *Una aproximación a la historia del sistema jurídico mexican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Article Received: 2018. 01. 20.

Revised: 2018. 02. 07.

Accepted: 2018. 02. 07.